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소방장비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모경종의원 (2214333)	2025.11.17.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6.02.0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6.03.24.)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윤건영의원 (2214495)	2025.11.24.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6.02.0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6.03.24.)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6.03.24.)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위 2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3.26.)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복잡·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 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어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함.

그 밖에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법률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구매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소방차량긴급정비 지원단 운영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및 제35조 신설).

나.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

거를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첨단소방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신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소방정대·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을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

1.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방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소방장비운용자가 운용하기에 편리할 것
5. 소방장비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제3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49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이 동원되었을 경우, 소방청장은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단을 재난현장에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 소방장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① 소방청장은 제39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관리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을 제11장으로 하여 이를 제46조 앞으로 한다.

제11장을 제12장으로 한다.

제10장(제40조부터 제4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 및 도입

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기술개발이나 기술의 개량이 인정되는 신기술 소방장비를 첨단 소방장비(이하 “첨단소방장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첨단소방장비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 이내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첨단소방장비의 대상·기준·심사·절차·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소방장비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해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례) ① 소방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시범운영을 위하여 첨단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 시 제출자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사항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규격
4. 제27조에 따른 소방장비 내용연수

② 첨단소방장비를 구매·관리·운용하는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구매·관리·운용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3조(성능평가) ① 소방청장은 지정된 첨단소방장비에 대하여 신구성·진보성 등 소방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의 수행주체,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범운영)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가 재난 현장에서 운용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으로 하여금 첨단소방장비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의 성능평가

또는 시범운영을 통하여 소방업무 현장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제54조 및 제55조로 하고,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한다.

제46조를 제53조로 하고, 제11장에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0조(종전의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국제교류 및 협력)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협력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소방장비 공동개발연구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제41조제1항에 따른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취소

제52조(종전의 제45조)제3호 중 “제44조제2항”을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54조(종전의 제47조) 본문 중 “제46조”를 “제53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소방기관”이란 <u>중앙소방학교 · 중앙119구조본부 · 소방본부 · 소방서 · 지방소방학교 · 119안전센터 · 119구조대 · 119구급대 · 119구조구급센터 · 항공구조구급대 · 소방정대 · 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u> 4. ~ 6. (생략) 7. “소방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u>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 ----- ----- ----- ----- -----. 4. ~ 6. (현행과 같음) 7. ----- ----- --, <u>의용소방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u> ----- -----. <u>제18조의2(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u> <u>1. 소방장비 구매의 투명성과</u>

	<u>효율성을 확보할 것</u> <u>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u> <u>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방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u> <u>4. 소방장비운용자가 운용하기에 편리할 것</u> <u>5. 소방장비운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u>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이 동원되었을 경우, 소방청장은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단을 재난현장에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u><신설></u>	④ 제4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 소방장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제39조의2(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① 소방청장은 제39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소방장비

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관리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소방장비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 및 도입

<제46조 앞 제11장>

<신 설>

제10장 보칙

<신 설>

제40조(첨단 소방장비의 지정) ①

소방청장은 기술개발이나 기술의 개량이 인정되는 신기술 소방장비를 첨단 소방장비(이하 “첨단소방장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첨단소방장비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 이내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첨단소방장비의 대상·기준·심사·절차·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소방장비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

<신 설>

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해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첨단소방장비의 구매 특

례) ① 소방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성능평가 또는 제44조에 따른 시범운영을 위하여 첨단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 시 제출자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사항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규격

4. 제27조에 따른 소방장비 내 용연수

<신 설>

② 첨단소방장비를 구매·관리·운용하는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구매·관리·운용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43조(성능평가) ① 소방청장은 지정된 첨단소방장비에 대하여 신규성·진보성 등 소방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의 수행주체,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시범운영)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가 재난 현장에서 운용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으로 하여금 첨단소방장비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연구개발 및 보급확대)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의 성능

<제40조 앞 제10장> <신 설>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의 구축) (생 략)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생 략) 제42조(수수료) (생 략)	평가 또는 시범운영을 통하여 소방업무 현장에 도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 인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46조(국제교류 및 협력) 소방청 장은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의 국 제협력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을 위 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소방장비 공동개발연 구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의 구축) (현행 제40조와 같음) 제48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현행 제41조와 같음) 제49조(수수료) (현행 제42조와
---	--

<u>제43조</u>(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같음) <u>제50조</u>(청문)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41조제1항에 따른 첨단소방장비 지정의 취소</u>
<u>제44조</u>(권한의 위임·위탁 등) (생략) <u>제45조</u>(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략) 3. <u>제44조제2항에</u>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직원	<u>제51조</u>(권한의 위임·위탁 등) (현행 제44조와 같음) <u>제52조</u>(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 ----- ----- ----- -----. 1.·2. (현행과 같음) 3. <u>제51조제2항에</u>----- ----- -----
<u>제11장</u> 벌칙 <u>제46조</u>(벌칙) (생략) <u>제47조</u>(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u>제12장</u> 벌칙 <u>제53조</u>(벌칙) (현행 제46조와 같음) <u>제54조</u>(양벌규정) ----- ----- ----- -----

